

오염토양반출정화(변경)계획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10일
제출인	성명(대표자명)			생년월일
	상호(명칭)			
	주소(사업장소재지)			전화번호
반출정화 사유	(관련법령 해당조항 및 그 밖의 사유)			
오염토양 현황	오염물질 및 농도			
	오염토양의 양(m³)			
	오염현장소재지			
	오염사유			
운반 계획	운반방법(자가 또는 위탁운반 여부/위탁운반의 경우 운전자 병기)			
	운반차량(번호)			
	운반장소(거리, km)			
	운반경로(소요시간, 운송시 통과하는 주요지점(도로) 등을 "→"로 연결하여 기재)			
정화 계획	정화방법			
	정화업자		(대표자 : 연락처 :)	
	정화소요기간			
	정화검증기관(토양관련전문기관)		(대표자 : 연락처 :)	
	정화토양 처리계획			
변경 사항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제3항 단서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
오염토양반출정화(변경)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이
 10
 15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최초 계획의 경우 가. 운반위탁계약서 사본(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나.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다.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라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같은 조 제4호의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변경 계획의 경우: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